

대 법 원

2000. 8. 22. 판결선고	인
2000. 8. 22. 원본영수	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0다21345 보험금

원고, 피상고인 망 박 [redacted] 의 소송수계인

1. 박 [redacted]

경산시 [redacted]

2. 박 [redacted]

부산 사상구 [redacted]

3. 박 [redacted]

4. 박 [redacted]

원고 3, 4 주소 경산시 [redacted]

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정 제

피고, 상고인 [redacted] 주식회사

서울 중구 [redacted]

대표이사 [redacted]

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

담당변호사 여 동 영, 김 기 덕

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0. 3. 24. 선고, 99나10613 판결

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 유 1. 원심이,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 [redacted]은 1995. 6.

12. 감기증세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고혈압 증세를 보여 그에 대하여 일시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정상상태로 되돌아갔으며, 그 이후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진단기에 의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정상이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[redacted]에게 나타났던 위 고혈압 증세는 감기 등과 같은 다른 질병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얼마동안 나타났던 혈압 상승에 불과하여 그것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 [redacted]이나 피보험자인 이 [redacted]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

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,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지의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.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,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박○○○이나 이○○○에게 피보험자의 과거의 건강상태,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의 질병이나 증상으로 약을 먹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실시한 부분은 그 판단의 당부에 관계없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, 이를 다루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0. 8. 22.

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\_\_\_\_\_

주심 대법관 서성 \_\_\_\_\_

대 법 관 유 지 담 \_\_\_\_\_

대 법 관 박 재 윤 \_\_\_\_\_